



제 420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〉

■ 강득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784호)

2025. 1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(안 제25조제1항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강득구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22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2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.

시·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,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광역대표도서관을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(안 제25조제1항)

가. 개정안 요지

- 시·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함(안 제25조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<u>운영하여야</u> 한다.	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직접 운영하여야</u>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 제25조¹⁾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)가 관할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26조²⁾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은 시·도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,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업,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.
- 현재 전국 17개 시·도³⁾ 중 10개 시·도는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, 7개 시·도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⁴⁾하고 있으며, 17개 시·도의 광역대표도서관 모두 시·도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음.

-
- 1) 「도서관법」 제25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, 시설,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지정·설립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·시설·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도서관법」 제26조(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)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·시행
2. 시·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제공
3.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
4.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·연구
5.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
6.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7.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
8.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
- 3) [참고. 17개 시·도 광역대표도서관 현황] 참조
- 4) 지정 운영 중인 7개 시·도 중 5개 시·도는 신규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음.

-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의 민간 위탁을 논의하다 도서관계 및 지역 주민의 반대로 철회된 사례⁵⁾가 있었음.
- 이에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·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, 지역도서관 발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도서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**문화체육관광부**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를 고려했을 때,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- **한국도서관협회**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·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문구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
02)6788-5379

5) 한국경제, “주민 반대에 백기…물 건너간 경기도서관 민간 위탁”, 2024.11.5. 등 기사 참조

참고

17개 시·도 광역대표도서관 현황

(2024.12. 기준)

지역	도서관명	지정 및 설립
서울	서울도서관	2012. 9. 28. 설립
부산	부산도서관	2021. 11. 1. 설립
대구	(기존)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	2011. 3. 1. 지정
	(신규)대구대표도서관	건립 중(~2025.10.)
인천	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	2008. 4. 1. 설립
광주	(기존)광주광역시립도서관	2010. 12. 21. 지정
	(신규)광주대표도서관	건립 중(~2026)
대전	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	2007. 9. 20. 지정
울산	울산도서관	2018. 4. 26. 설립
세종	세종시립도서관	2021. 11. 11. 설립
경기	(기존)수원시선경도서관	2015. 1. 2. 지정
	(신규)경기대표도서관	건립 중(~2025)
강원	춘천시립도서관	2018. 11. 26. 지정
충북	청주시립도서관	2020. 1. 2. 지정
	충북대표도서관	건립 중(~2029)
충남	충남도서관	2018. 4. 25. 설립
전북	(기존)전북도청도서관	2010. 11. 22. 지정
	(신규)전북대표도서관	건립 중(~2027)
전남	전라남도립도서관	2011. 10. 20. 설립
경북	경북도서관	2019. 11. 13. 설립
경남	경남대표도서관	2018. 2. 12. 설립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	2008. 11. 13. 설립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